『ISSUE BRIEF』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우리나라의 정책정당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여기에 실린 내용은 HOT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목 차 -

1.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인가?

(1) 안보를 지키는 특별형사법

(2) 기본권 제약 요소를 내포

2.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1) 국가보안법은 전면폐지한다

(2) 형법을 개정하여 필요 조항을 삽입한다

3.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1) 법 적용상의 문제

(2) 처벌 축소의 문제

(3) 헌법과의 문제

(4) 경과조치의 문제

4. 열린우리당의 폐지 주장, 논거는 타당한가?

(1) 국가보안법이 평화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5.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가?

(1)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

(2)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

6. 결어

<부록 1 : Q&A로 풀어본 사례>

<부록 2 : 국가보안법 전문>

휴전선 철책이 뚫렸다고 한다. 어이없는 뉴스였지만
그 덕에 잊었던 휴전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생각컨대 아무도 가시철조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해서 설치한 것뿐이다.
또한 철조망을 뚫고 넘어오려 한 쪽은 항상 북한이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이다.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기에 지켜나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쪽도 언제나 북한이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지켜보며 이것이 혹시 '트로이의 목마'는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한 치의 허점도 허용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자료집 형식으로 이번 이슈브리프를 꾸며보았다.

1.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인가?

(1) 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형사법

국가보안법은 6.25 남침 이래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안보형사법으로서, 일반형사법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음

-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제1항)

【국가보안법의 연혁】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반란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률 제10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11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음

크게는 4.19혁명 이후 대폭 완화되었다가 5.16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반공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며,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국가보안법의 형식으로 존속하게 되었음

1991년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 침해 소지를 대폭 없앤 이후 그 기본 골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2) 기본권 제약 요소를 내포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부 조항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남용 또는 악용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

-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스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1조제2항, 91년 신설)

【방어적 민주주의란?】

'방어적 민주주의'는 나찌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이론으로 한마디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주지 말자'는 것이며, 서독 기본법이 채택한 이래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우리 헌법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세력에게마저도 기본권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조치로서 국가보안법의 이론적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임

2.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은?

(1)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한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하였는 바, 그 논거로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으며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 - 노대통령), 북한과의 관계에서 교류협력 등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임

개정이 아니라 폐지이므로 4장 25조로 구성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안보형사법체제 자체가 폐기되는 것임

(2) 형법을 개정하여 필요 조항을 삽입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안보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형법 중 내란목적단체조직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음

【형법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형법	열린우리당 개정안
第1章 內亂의罪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1.~ 3. (생략)	
(신설)	제87조의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제87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第89條 내지 第90條 (생략)	
第2章 外患의罪	
第98條(間諜) ①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98條(間諜) ①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1) 법 적용상의 문제

①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관련성을 여러 양태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일단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근거가 없어지게 됨

-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법 제2조)

② 열린우리당은 이와 관련하여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하고 내란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제87조(내란)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개정안 제87조의2)

③ 이 경우 과연 북한이 내란목적단체로 해석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임

- 특히 목적범 범죄에서 '---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 비폭력 사상전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폭동'의 목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북한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임

【현 정부 사법당국의 견해】

· “폭동 개념을 포함시키면 실무상 법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어느 나라든 나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는 필요하다”(검찰총장 2004.10.19 국정감사)

· “어떤 행위를 처벌되느냐가 모호해 판례나 해석에 의존하게 되면 법관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법의 개정·폐지 또는 대체입법 등 무엇을 하든간에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를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법원행정처장 2004.10.21 국정감사)

(2) 처벌 축소의 문제

① 북한이 형법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란목적단체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만 처벌하고 그밖에 이 단체와의 관련성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 또 다른 문제임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라 없어지는 처벌조항】

① 반국가단체구성·가입죄 (제3조)
② 목적 수행죄 (제4조)
③ 자진지원·금품수수죄 (제5조)
④ 잠입·탈출죄 (제6조)
⑤ 찬양·고무, 국가변란 선전·선동죄 (제7조제1항)
⑥ 이적단체구성·가입죄 (제7조제3항)
⑦ 이적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죄 (제7조제5항)
⑧ 회합·통신죄 (제8조)
⑨ 편의제공죄 (제9조)
⑩ 불고지죄 (제10조)

② 결과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친북활동을 하는 것이 용인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이 허용되는 등 이념 혼란을 초래해 안보의 치명적 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실제 적용례를 설명해 놓은 <부록 1> 참조

(3) 헌법과의 문제

①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고 헌법의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내재된 정신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헌법 인식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그러한 방어장치로서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을 동등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함이 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됨

②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따라서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차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쟁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음

(4) 경과조치의 문제

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제4조(목적수행) 및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의 규정에 위반하여 받은 형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② 우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해 면소판결을 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어 처벌이 불가능함

※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재판거부 사태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③ 또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폐지법률(안)에 의할 경우 제3조 내지 제5조 이외의 규정위반 즉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등),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등으로 인해 복역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석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④ 따라서 여당의 폐지법률(안)은 안보 위해사범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나아가 허용하는 것이 되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임

4. 열린우리당의 폐지주장, 논거는 타당한가?

(1) 국가보안법이 평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고, 북한의 헌법상 지위는 대한민국 영토를 참절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함

실제로 6.25 남침 이래 적화통일 야욕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1의 가상적이기도 함

② 그러나 우리 헌법은 동시에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에 평화통일의 상대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③ 헌법이 북한에 대해 이와 같이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양면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일 것임

따라서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는데 동해로는 금강산 관광을 가는 현실이 실제로 시현되고 있는 것임

【대법원 판례(2004.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남북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했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헌법 규정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두는 것은 전혀 모순되거나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음

(2)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국가보안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제약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이 점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남용 또는 악용하여 정권에 반대한 학생 및 지식인을 탄압한 역사가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② 1991년 개정을 통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어졌음

- '법의 적용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제1조제2항)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③ 또한 남용이나 악용은 법보다는 운용의 문제로서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서고는 그러한 사례가 거의 없음

입의도연구소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자가 해마다 격감하고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는 자도 단 3명에 불과함

④ 일부 조항은 제도적으로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들어 이들 기본권 제한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 결정(2004.8.26 헌재 2003헌바85·102병합】

-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의 구성요건 중의 개념이 상당한 정도로 정립되어 불명확성은 제거되었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 또한 제거되었음
- 제7조제5항도 동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바 조항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구성요건 중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님
- 국가보안법 제7조는 형법상의 내란죄 등 규정의 존재와는 별도로 그 독자적 존재의의가 있는 것임

5.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가?

(1)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

①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안보형사법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순기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

② 따라서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그 실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형법적 접근을 갖고는 북한의 간접적 사상전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함

③ 이러한 뜻에서 국민들도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역간 세대간 차이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실시 기관 (시기)	현행 유지	존치 후 개정	폐지 후 대체입법	폐지 후 형법보완	완전 폐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10.8)	15.7%	45.7%	17.8%	9.4%	5.2%
MBC/KRC (10.18)	13.9%	48.3%		22.6%	7.8%

④ 특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안보가 취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안보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해외자본이 철수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도 우려하고 있음

(2)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

① 국가보안법의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임

②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

6. 결어

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없고 형법개정을 통한 보완을 하더라도 안보상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국 반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여건 조성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됨

② 국민 여론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나, 보다 민주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한 만큼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시각에서 정리된 개정시안을 당 『국보법 태스크포스(TF)』에 비공식 제출할 예정임

<부록 1> Q&A로 풀어본 사례

○ 저는 한총련 최고위 간부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 이제 북한 노동당 등 **「내란목적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한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에 동조해 찬양·고무·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총련이나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등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왔지요
-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형법개정안에서는 이적단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한총련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사법처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위수김동)의 전집을 제가 사는 대구에서 인터넷으로 전파하고 싶습니다. 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마음껏 흔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지금처럼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게 된다면 제7조의 찬양·고무죄로 처벌되시겠죠
- 하지만 여당안이 통과된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만 드러내지 않고, 폭동이라는 인상만 주지 않으신다면 결코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 이제 **주체사상 전파가 마음껏 허용되는 셈**이죠^^

○ **충청도에 사는 ○○○입니다.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무척 감동을 받았는데요, 북한 방송 유인물을 배포해도 될까요?**

- 지금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 하지만 앞으로는 북한 방송 유인물을 배포하더라도 찬양·고무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네요
- 그 **유인물 내용이 북한의 혁명 노선에 따라 폭동으로 한국 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한 절대 처벌받지 않으시겠죠^^**

○ **서울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 주체사상을 퍼뜨리며 동조자들을 포섭하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 현행 국가보안법에서는 물론 제7조의 찬양·고무죄로 처벌되시겠죠
- 하지만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여당의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폭동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요인을 암살, 국가기관시설 방화·파괴 등의 **폭동을 준비하지 않는 한 북한 지령을 받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저는 서울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 간첩인데요, 앞으로는 활동이 자유로워질까요? 저에게도 좋은 세상이 오는 건가요?**

- 그동안 공작원이나 간첩이 검거되면 행위 유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 회합·통신, 잠입·탈출 등의 조항으로 처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의 내란이나 내란목적단체조직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방침인가 보네요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는 폭동을 예비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폭동 계획만 꼭꼭 숨긴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 여당은 또 형법상의 간첩죄로도 간첩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외국」이 될 수 없고, 공안 관계자들도 「외국」에는 부정적이라니 걱정할 것 없겠죠

○ **저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공작금을 받는 방법 없을까요?**

- 현행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공작금을 받는다면 금품 수수죄로 처벌되겠죠
- 하지만 이번에 국보법이 폐지되고 형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돈을 '왜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즉 금품을 수수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겠죠
- 은밀하게 주고받고 그냥 장학금으로 받은 거라고 발뺌하면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공안 관계자들이 무슨 수로 폭동자금인 것까지 밝혀낼 수 있겠어요^^

○ **강원도 동해안에 사는 ○○○입니다. 잘 알고 지내고 자주 만나는 남파 공작원이 있는데요, 괜찮을까요?**

- 현행 국가보안법은 ‘회합·통신’ 조항과 ‘불고지’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그 접선이 내란을 위한 폭동의 목적이나 폭동 준비에 관한 얘기가 없는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남파 공작원을 만나도 됩니다.

YDI
여의도연구소

<부록 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등<개정 1991·5·31>)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1·5·31>

제2조 (정의<개정 1991·5·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5・31>
④삭제 <19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삭제 <19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19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90헌마82 1992.4.14 국가보안법(1980.12.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5.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로금)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전문개정 19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1·5·31>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개정 1987·12·4, 1994·1·5>

ISSUE BRIEF 2004-03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 11월 2일 인쇄
2004년 11월 2일 발행
발행인 박세일
발행처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기계회관 신관3층